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

CONTENTS 목차

1.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2.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요약

3.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 공공재정 · 공공재정지급금
-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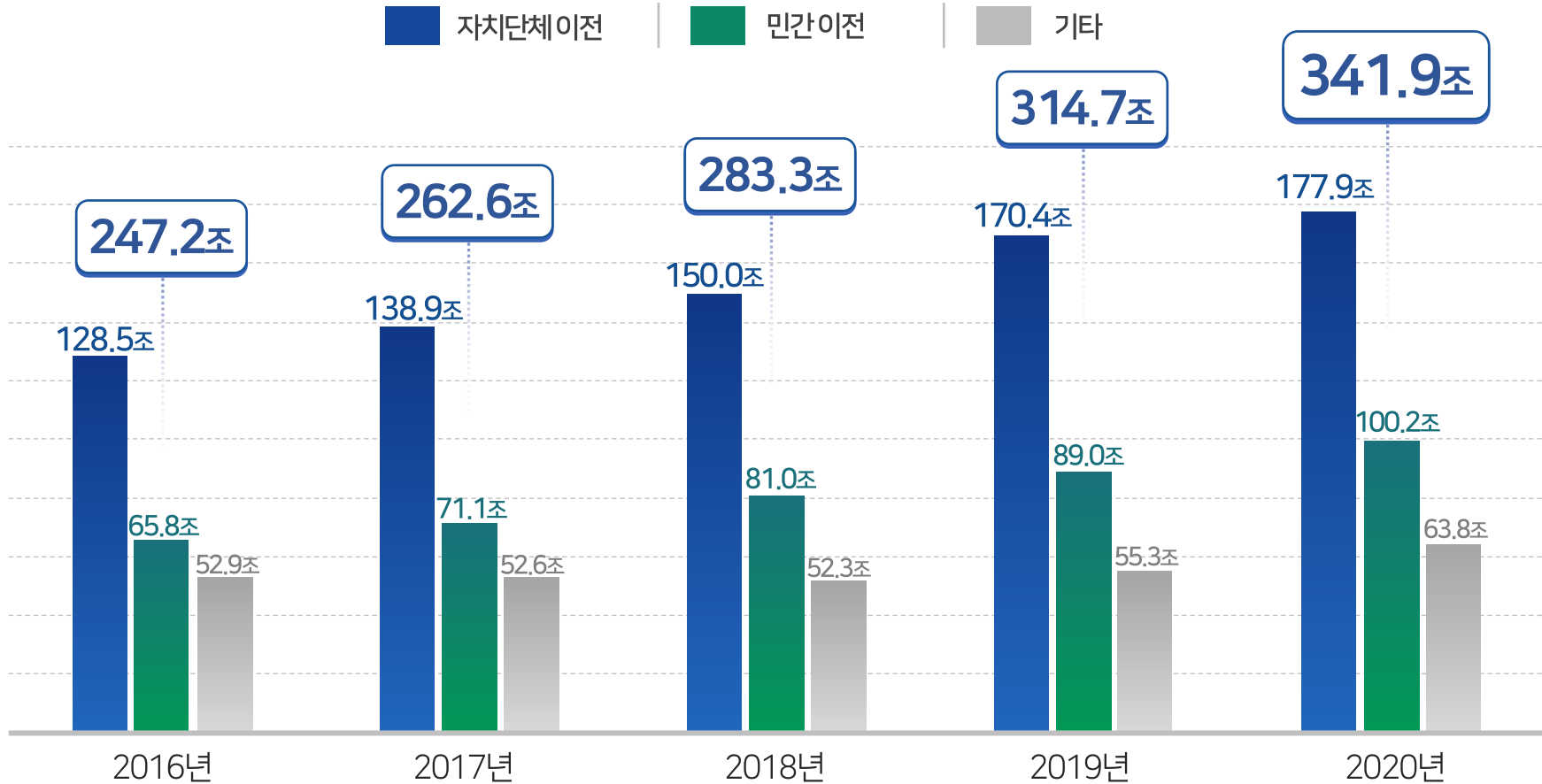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이전 지출' 추이

* 2020 주요재정통계



* 이전지출?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MBC NEWS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 2차 점검서도 71건 적발

일명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화물차와 주유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도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화물차
59대, 주유소 12곳에서 총 7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결제하는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들은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주간동아

애 돌보라고 돈 줬더니, 원장 주머니로
갔다. 유치원 지원금 왜?



유치원들의 정부 지원금 횡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2013~2017년 전국 17곳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에 따르면 유치원 1878곳에서 총 5951건의
부정수급 및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지원금을 전용해
가족 여행 비용으로 쓰거나, 명품 가방을 산 경우가
적잖았고, 가족 회사와 수익계약을 맺어 지원금을
빼돌리는 지능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가거점뉴스통신사
연합뉴스

'농업 보조금은 눈먼 돈'...
축사 공사비 편취 · 사업비 과다계상
경남도, 농업분야보조금 불법 감사...91건
적발 · 15억 회수

경남도는 농업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시행해 모두
91건에 걸쳐 15억3천여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려고
창원 · 의령 · 창녕 · 하동 · 합천 등 5개 시 · 군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정부에서 생활 적폐 9대 과제 중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인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결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이사회 연차별 전국에서

그러나, 공공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청구도 지속적으로 발생...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신고사건 분석

(단위: 억 원)

2013년 10월 ~ 2020년 3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액 **약 1,250억 원 환수 결정**

1,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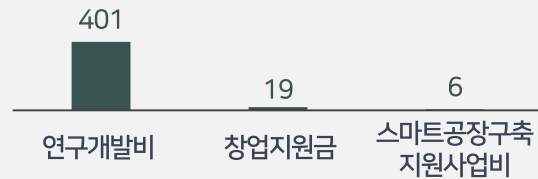
유형별 신고사건 현황

(단위: 건)

보건복지 분야



산업자원 분야



고용노동 분야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교육 분야 부패사례

○○대학교 총장은 학교법인 ○○학원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할 미지급 급여 약 6,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임의로 집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고등학교 교감 등이 해당 학교 교원 임용 및 법인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학교회계로 지출 처리함으로써 총 3,080만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

☞ 해당 고등학교 교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학교 회계 담당자와 ○○업체 대표가 공모하여 해당 학교 업무용 복사기토너를 교체하면서 재생토너를 마치 정품토너 가격으로 허위 청구하여 1,560만원 상당의 차액을 편취

☞ 해당자들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고등학교 교장은 기초 영문법을 수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맞춤형 수업 운영지도수당 약 450만원을 편취하였고, ○○고등학교 교감 및 교사 16명은 교장의 운영지도수당 편취 행위 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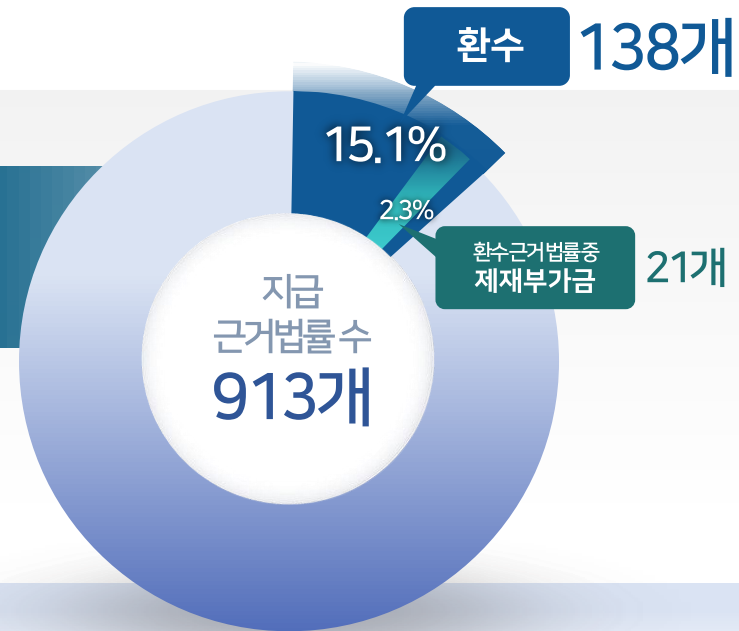
☞ 교장, 교감, 교사 16명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현행법률(1,446개, '18.4월 기준) 전수조사 시
환수 근거가 있는 법률은 138개(15.1%)에 불과

- 공공재정 지급 근거 법률 913개
- 환수 근거 법률 138개
- 제재부가금 유사규정 있는 법률 21개



부정청구에 대해 금전적 제재없이 환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부정이익을 반환 받아야 함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

재정누수 증가에도
행정청의 적극적 대응에 한계



]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으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요약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요약

공공재정환수법 =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공공재정에서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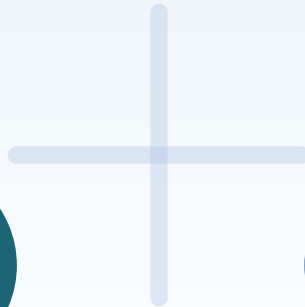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요약

공공재정환수법 =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누구든지 **부정청구 행위**를 신고하면?



안전하게
신고자 보호



세상을 바꾸는 용기
신고자 보상·포상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20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부터 적용**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배제

- 0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 0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 03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 04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Q&A 1

Q

2019년에 지급된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받나요?

A

아니요,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적용하므로 2019년에 부정수급한 보상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Q&A 2

Q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도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한 기관과 교부받은 기관의 관계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육청에서 학교에 배정하는 목적사업비의 경우, 목적사업비 자체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므로 학교 등이 일반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학교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여 환수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
우선 적용

1.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2. 부정이익의 환수
3. 제재부가금 부과
4. 가산금 및 체납처분
5.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
6.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불복절차
7. 명단 공표
8. 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시

지역○○협회장 A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보조금을
부정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지급근거 법률이 우선 적용
지급근거 법률에 관련 조항이 없으면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우선 적용

지방재정법

환수 규정

제재부가금 부과 규정

명단공표 규정

지급근거 법률에 조항이 없을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다른 법률과의 관계

Q&A

Q

다른 법률에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부정청구 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체납처분, 명단공표 규정이 있어 이 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다면 공공재정환수법은 적용이 배제되나요?

A

아니요,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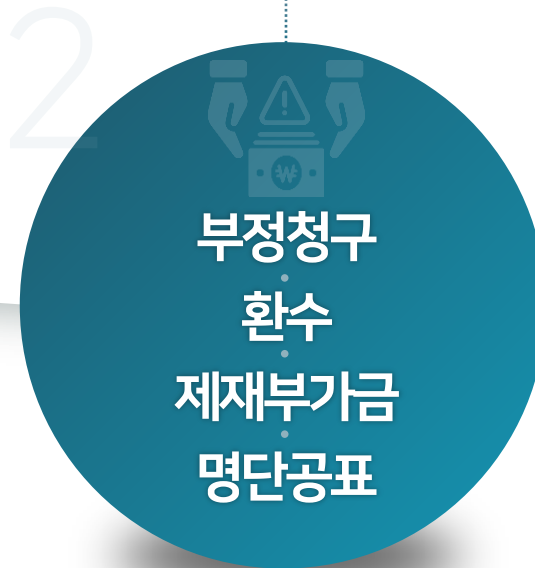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체납처분, 명단공표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정청구등의 신고, 이행실태 점검, 기록관리 등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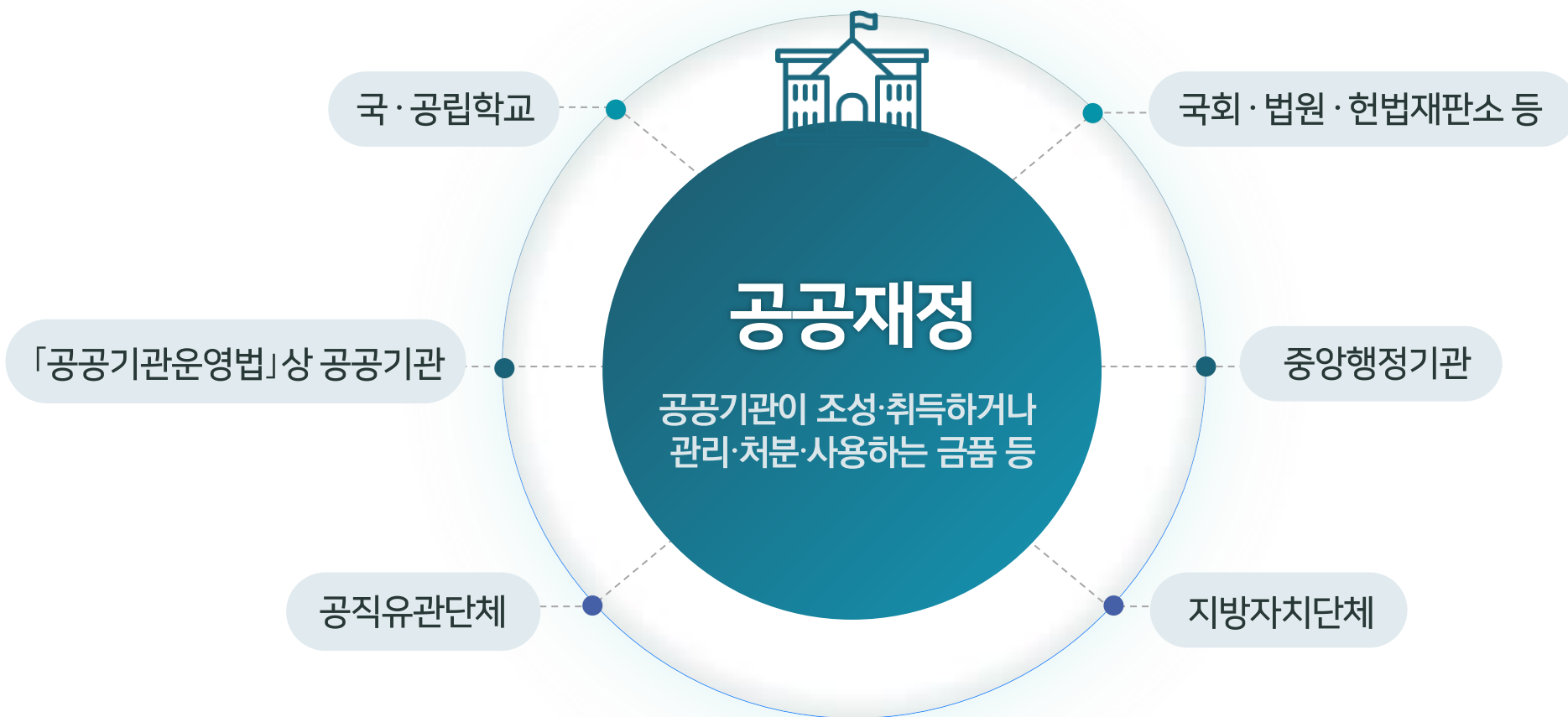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범위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범위

교육청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시·도 교육감 소속의 보조기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0조)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교육지원청

-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교육지원청도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Q&A

Q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해당 하나요?

A

아니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공립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사립학교는 「공공재정환수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법 제2조제5호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2조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고용촉진지원금,
공익직접지불금,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훈급여금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하는 금품 등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중앙행정기관 소관

- 01.310-01 손실보상금
- 02.310-03 포상금
- 03.310-04 기타보전금
- 04.320-01 민간경상보조
- 05.320-05 이차보전금
- 06.320-06 구호 및 교정비
- 07.320-07 민간자본보조
- 08.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 09.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 10.340-01 해외경상이전
- 11.340-03 해외자본이전
- 12.350-01 기관운영출연금
- 13.350-02 사업출연금
- 14.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
- 15.350-04 민간기금출연금
- 16.360-01 연구개발인건비
- 17.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
- 18.360-03 연구개발건축비
- 19.360-04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 20.360-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 01.301 일반보전금
- 02.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 03.303-01 포상금
- 04.306 출연금
- 05.307-01 의료 및 구료비
- 06.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07.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 08.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 09.307-08 이차보전금
- 10.307-09 운수업계보조금
- 11.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 12.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13.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14.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15.308-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 16.310-01 국외경상이전
- 17.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 18.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19.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20.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교육자치단체 소관

- 01.310-01 보상금
- 02.310-03 포상금등
- 03.320-01 민간보조
- 04.320-07 이차보전금
- 05.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이전경비
- 06.340-01 해외경상이전
- 07.350 출연금
- 08.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 09.620-01 인건비지원
- 10.620-03 목적사업비
- 11.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 12.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 13.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 14.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 15.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 16.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 17.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 18.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 19.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 20.620-17 학교운영비(지원금)
- 21.620-18 목적사업비(지원금)
- 22.620-19 운영비재정결함보조(지원금)
- 23.620-20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지원금)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교육자치단체 소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_교육부훈령)

310-01 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학금및학자금, 민간인보상금, 민간행사지원금, 사회복무요원 보수
310-03 포상금등	포상금등
320-01 민간보조 (現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320-07 이차보전금	이차보전금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이전경비	청소년단체활동보조금, 학생치료비
340-01 해외경상이전	해외경상이전
350 출연금 (350-1 출연금)	출연금, 기타출연금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투자교육지원사업비
620-01 인건비지원	계약제교원인건비지원, 무기계약직근로자인건비지원, 기간제근로자인건비지원
620-03 목적사업비	목적사업비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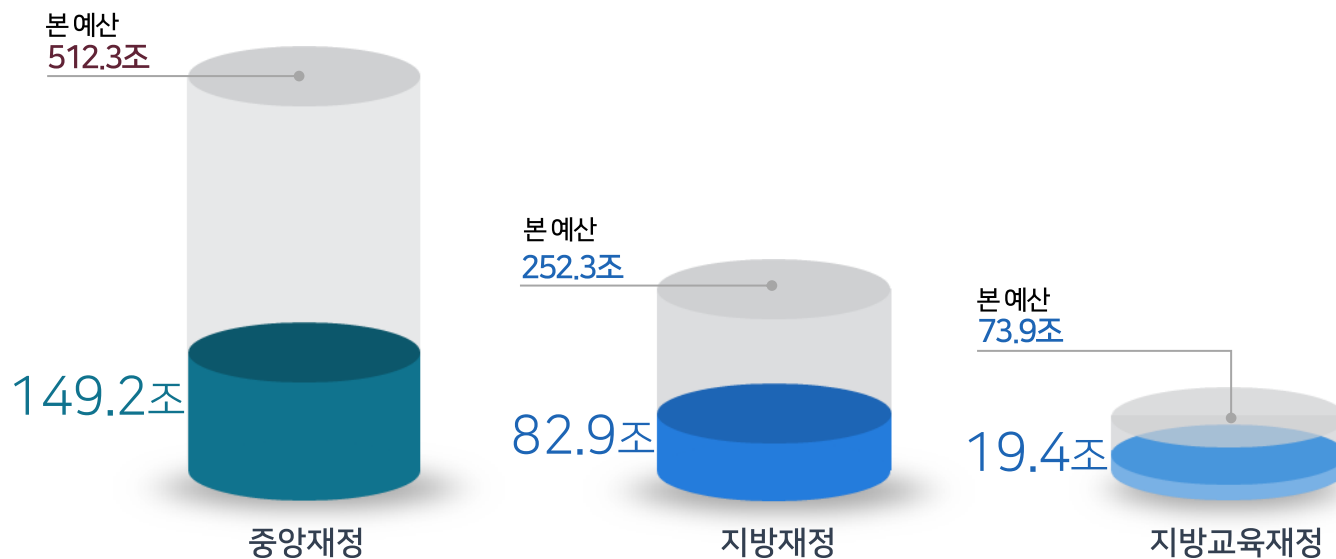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교육자치단체 소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_교육부훈령)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학교특별교육지원비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사립학교 시설지원
620-13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사립학교특별교육비지원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누리과정학비지원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계약제교원인건비지원,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지원, 기간제 근로자인건비지원
620-17 학교운영비(지원금)	現 학부모부담지원금(640) 640-01
620-18 목적사업비(지원금)	現 학부모부담지원금(640) 640-02
620-19 운영비재정결함보조(지원금)	現 학부모부담지원금(640) 640-03
620-20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지원금)	現 학부모부담지원금(640) 640-04

공공재정지급금 추산 규모

법 적용대상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추산



국가재정 2020년 본예산 기준 약 251.5조 추산

중앙재정 149.2조 | 지방재정 82.9조 | 지방교육재정 19.4조

2020년 본예산 기준 국가재정 838.5조 중 30.0%에 해당,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금(86.7조)포함

Q&A

Q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립학교의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네.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의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정의 됩니다.

따라서,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자치법규 등에 따라서 사립학교의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보조하기 위해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행정청과 부정수익자

행정청

VS

부정수익자

-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각급 학교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환수 및 제재처분 가능

- ▶ 부정이익을 얻은 자

- ▶ 국회 등 헌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국·공립학교도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음

Q&A 1

Q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받은 **학교도 행정청**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네, 공공재정지급금 집행권한을 가질 경우 행정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위탁)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A 2

Q

국·공립학교도 「공공재정환수법」상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정수익자'의 정의에 따르면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외 공공기관은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가 교육청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받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 하였다면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Q&A 3

Q

예술꽃씨앗학교로 선정되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학교가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부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이 환수하나요?

A

아니오, 해당 지원금 소관 행정청이 환수합니다.

예술꽃씨앗학교 운영사업은 문화소외지역의 전교생 4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전교생이 문화예술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지원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꽃씨앗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예술꽃씨앗학교 운영사업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가 집행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므로 교육청이 부정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이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 사업비(보조금)를 환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청구의 유형

법제2조제6호

부정청구



가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목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목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목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Q&A 1

Q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실제 근로하지 않고 공공재정지급금인 근로장학금을 받았다면, 어떤 부정청구 유형에 해당하나요?

A

허위청구에 해당합니다.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고 해서 장학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한 경우에만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허위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A 2

Q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소규모급식시설개선비를 지원받아 급식실을 개·보수하고 남은 잔액으로 노후급식기구를 교체하거나 교실 개·보수비용으로 집행하였을 경우 부정청구에 해당하나요?

A

임의로 집행하였을 경우 부정청구(목적외사용)에 해당합니다.

교육청은 학교에 소규모급식시설개선(학교환경개선사업비 620-04) 목적으로 지원하였으므로 학교는 급식실 개·보수 후 남은 잔액은 교육청에 반납하거나 변경 승인을 통해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목적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소규모급식시설 개선으로 판단해야 하며, 학교가 공익 차원에서 한 행위라 할 지라도 학교가 수익자라는 측면에서 변경승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집행한 행위는 목적외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에 따른 제재처분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 이자포함

제재부가금 부과

× 최대 5배

법의 실효성 확보 장치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부정이익등의 환수

법 제8조

환수

+

지급 중단
(법 제7조)

확실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결정 취소

환수하는 경우 부정이익 + 이자 환수

불확실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환수금액 산정

환수금액

=

부정이익 가액

+

이자

허위청구

제공받은 금액

과다청구

(과다하게 청구받은 금액) - (원래받아야하는 금액)

목적외사용

목적과달리 사용한 금액

오지급

잘못 지급된 금액

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연 1.8%"

이자 계산기간
부정청구 발생한 달 ~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개월 수

Q&A 1

Q

담당자의 착오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중복지급 하는 등 부정수익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오지급의 경우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나요?

A

네, 이자를 부과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등'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오지급)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담당자 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정이익 가액에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20.3.기준, 연 1.8%)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Q&A 2

Q

카드포인트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하나요?

A

네,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합니다.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경우 포인트 배정 자체가 아닌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집행하는 등 청구인에게 현실적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자 등을 환수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배정받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포인트를 회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는 조치 외에 이자환수는 하지 않습니다.

제재부가금 부과

법 제9조

제재부가금 :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부정이익(+이자)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법 제9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x5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3배

x3

목적외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2배

x2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감면할 수 있음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과실 50%

행정청의 과실 100%

제재부가금의 감면사유

법 제10조

행정청 사전통지 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감경 · 면제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 사유

법 제11조

환수금액(이자 제외)이 100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환수처분 통지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 누적 금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최초 지급일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적발사실 無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 부정청구 금액이
10만원 이하

Q&A 1

Q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지급하는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금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와 유사한 지원금이므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부정이익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하며, 그 예외도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만 제한적으로 인정, 문언적으로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열거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A 2

Q

부정수익자가 정산절차 전에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나요?

A

네, 제재부가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익자가 정산절차 전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환수

환수 사유

부정이익

환수금액 (부정이익+이자)

납부기한

납부기관

납부방법

제재부가금

부정청구등의 종류

제재부가금

납부기한

납부기관

납부방법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서식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환수

환수 사유

부정이익

환수금액(부정이익+이자)

납부기한

납부기관

납부방법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① 성명 (대표자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사무소 소재지)			
④ 부정이익		원		
⑤ 이자		원		
⑥ 환수금액(④+⑤)		원		
⑦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원		
⑧ 납부할 금액(⑦+⑥)		원		
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 (부정청구등의 종류 등)				
⑩ 납부기한				
⑪ 납부기관				
⑫ 납부방법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근거 법률명 또는 자치법규명」 제00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하에게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해당 사업 명칭)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오니 불응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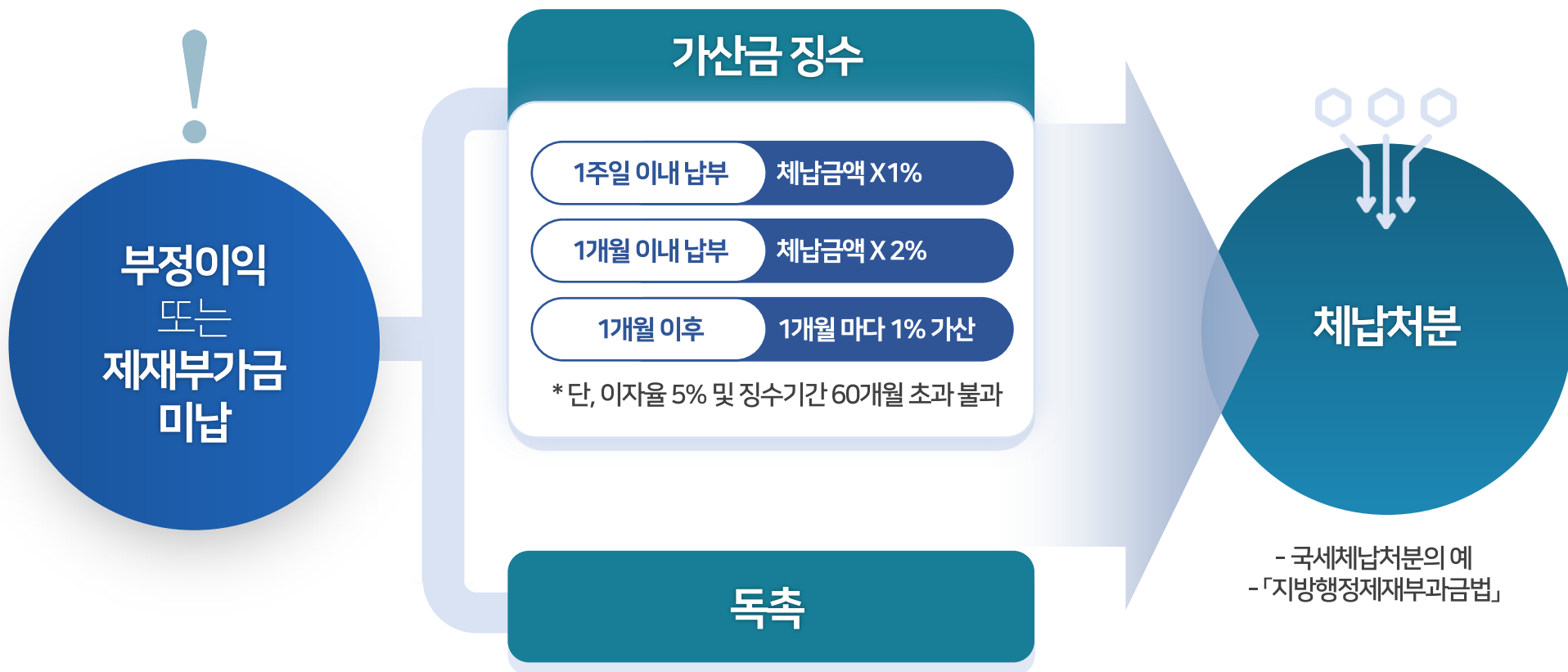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표상지 80g/㎡]

가산금 및 체납처분

법 제12조



가산금 및 체납처분

서식

독촉장

부정이익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

1주일

1개월

1개월

* 단, 이

독촉장

납부 의무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독촉내용	해당 공공채정지급금(사업)명			
	구분	납부할 금액		
	환수금액	원		
	제재부가금	원		
	금액 계 ①	년	월	일까지 원
	가산금 ②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금액 계(①+②)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납부 장소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부정이익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이 체납되었으니 체납금액 및 가산금을 위의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채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국세 체납처분(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조사 실시

법 제13조

행정청이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대상



부정청구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자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대표자

조사범위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재산 관계 공부 등의 열람·복사나
등본 또는 초본 발급 청구 가능

사무소·사업장
출입 조사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방법·절차 준용

명단 공표

법 제16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 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2회 이상
- ②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 3천만원 이상



명단 공표 절차 등

서식

명단공표 관련 예시

심의위원회 심의

구성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위원장은 행정청의 부기관장
위원은 고위공직자 3명 이내, 민간전문가

임기

3년

1차례 연임 가능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대상 통지서

명단공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표내용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성호·나이 및 주소 (기관·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기관·법인·단체의 명칭·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그 밖의 공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표하도록 결정된 사항	
소명기한	년 월 일	명단공표 예정일 년 월 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명사유가 있는 경우 불입 명단 공표 소명서를 소명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명기한 내에 부정이익 등 행정청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명단공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영·정)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소명 내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에 따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기관장 귀하

작성방법

소명 내용란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 내용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처리기관		

210mm×297mm[복합지: 80g/㎡]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Q&A

Q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기존에 유사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나요?

A

네, 위원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심의위원회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1조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한다면 기존의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록관리

법 제25조

행정청은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 내역을 기록·관리



공공재정지급금 명칭

처분일

처분대상자

처분 사유

처분 금액 및 납부기한

명단공표 방법 등

기타

서식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2020 - 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지급근거 법률 및 자치법규				
부정수익자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 과다청구	☐ 목적외사용	☐ 오지급
부정이익 가액				
제재부가금 부과금액				
부정청구 요지				
1. 지급중단				
	처분일	처분 사유	기타	
2. 환수처분				
	처분일	환수금액	이자	납부기한
3. 제재부가금				
	처분일	납부기한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및 갱면 사유	
4. 가산금				
	처분일	가산금	납부기한	
5. 체납처분				
	처분일	기타		
6.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의결일	공표방법	공표일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 처리 방법 · 절차 등 준용

신고자 보호(비밀보장)

신고자(협조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법 제20조

- 누구든지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자의 징계권자에게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신고자보호(신분보장)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 제19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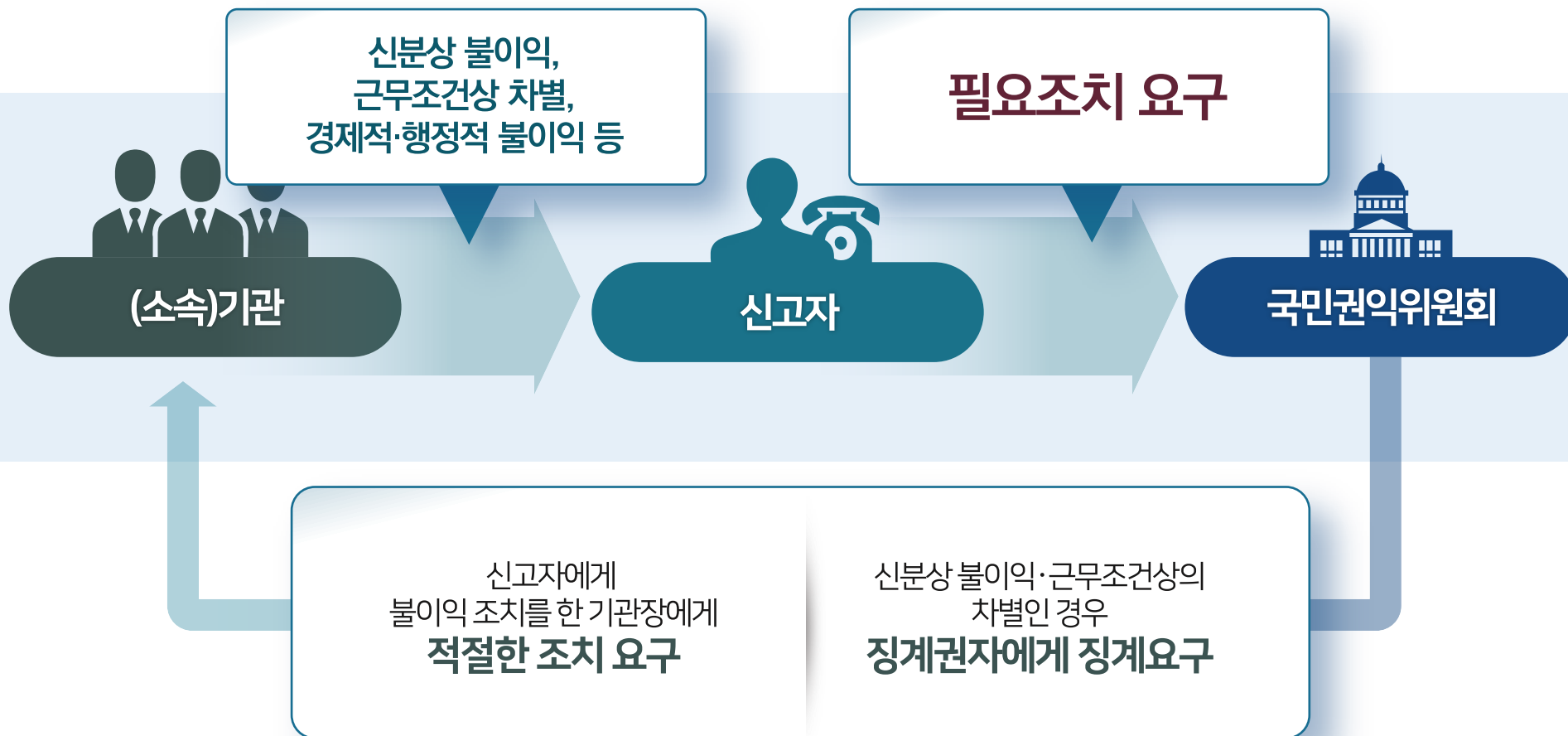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허가의 잠정적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 가능

신고자보호(신분보장)



신고자등 보호 (신변보호조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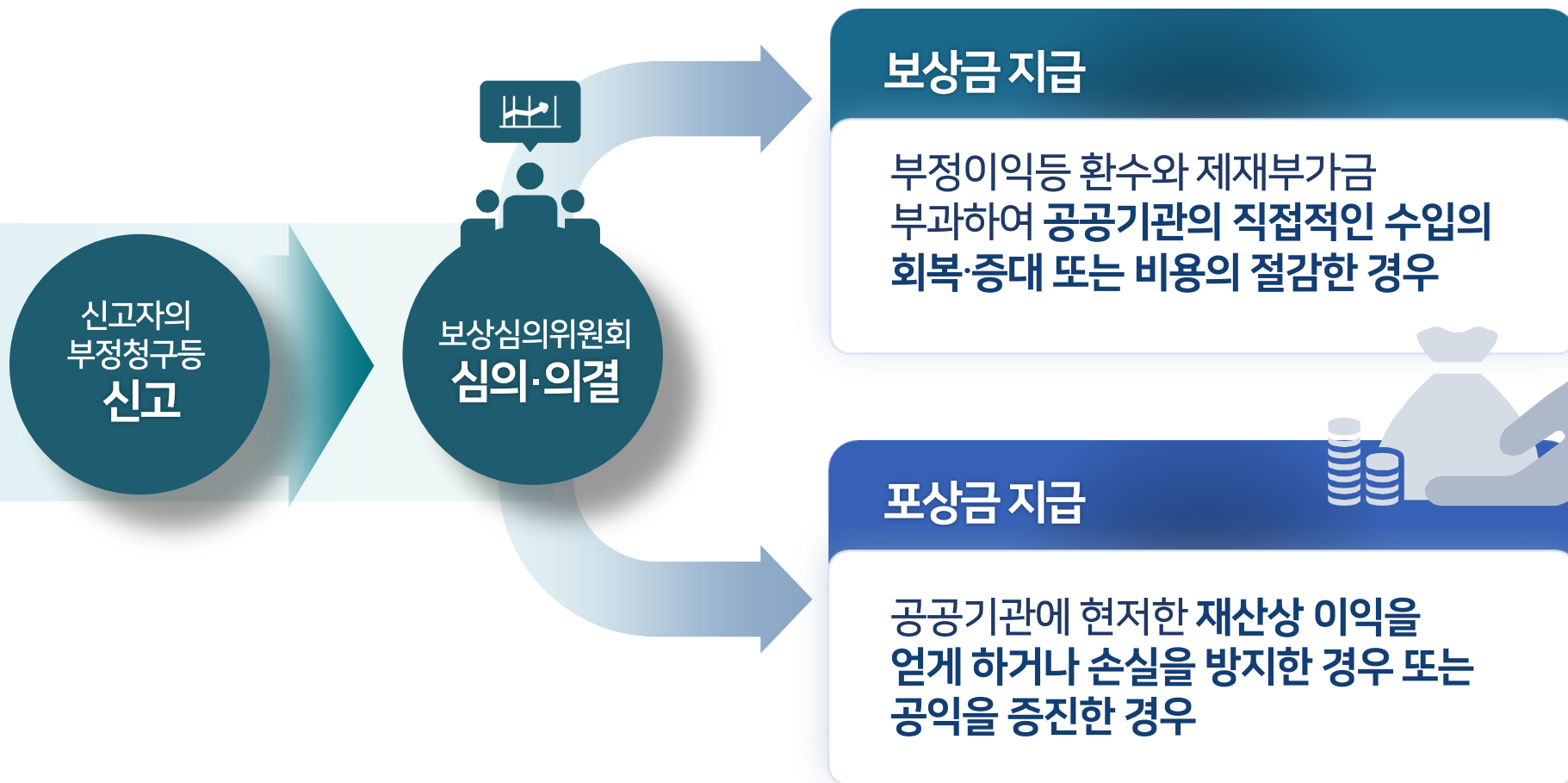
신고자 보호(책임감면)

형벌, 징계 ·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가능

법 제22조

- | | |
|--------------------------------------|--|
| <p>➤ 형 의
감경 · 면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구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 <p>➤ 징 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 · 면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구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에 징계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신고자(협조자)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행정처분하는 경우 처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국민권익위의 징계감면 요구에 따라야 함) |
| <p>➤ 직 무 상
비 밀 준 수
의무 배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구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신고자 보상



벌칙 규정

- 부정청구 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구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자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해 조사를 하는 때에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구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의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권익위원회